상벌세칙

제 정 2006. 8. 18 개 정(1) 2008. 9. 4 개 정(2) 2013. 2. 1 개 정(3) 2015. 8.18 개 정(4) 2015. 10. 1 개 정(5) 2016. 1.13 개 정(6) 2017. 7. 7 개 정(7) 2018. 3.19 개 정(8) 2018. 12. 12 개 정(9) 2019. 11. 29 개 정(10) 2020. 6.24 정(11) 2020. 9. 1 개 정(12) 2020. 9.29 개 개 정(13) 2021. 1. 28 정(14) 2021. 12. 20 개 정(15) 2022. 12. 22 개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직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기앙양과 기강의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상벌의 결정과 집행) 직원의 상벌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결권자가 이를 행한다.
- 제3조(상벌의 기록) 표창 또는 징계사실, 주의촉구는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. 다만, 단체표창인 경우에는 각 개인별로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지 아니한다.

제2장 표창

- 제4조(표창원칙)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표창하다.
 - 1. 탁월한 창의력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사업무의 발전에 공헌한 자
 - 2. 공사의 신용과 명예를 크게 앙양시킨 자
 - 3. 윤리·청렴의식을 바탕으로 공사의 윤리·준법 관련 정책 및 준수사항을 적극 실천하여 윤리·준법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
 - 4. 기타 특별한 노력으로 공사에 기여하여 표창할만하다고 인정되는 자
- 제5조(표창방법) ①표창은 직원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행하되 그 방법 은 표창장과 부상의 수여에 의한다. 다만, 부상의 내용은 그때마다 사장이 이를 정한다.
 - ②제1항의 단체이라 함은 본부, 실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단위를 말한다.
- 제6조(표창절차) ①각 부서장은 직원중에서 제4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「표창추천서」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장 앞으로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.
 - ②인사담당부서장은 전항에 의한 추천이 있거나 또는 표창할만 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인사위원회에 부의한다. 단, 제4조 3호에 의거하 여 표창을 실시할 경우 윤리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인사위원회에 부의한다.
- 제7조(유사명칭의 사용 및 이중표창의 금지) ①이 세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표창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.
 - ②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표창하지 아니한다.

제3장 징계

- 제8조(징계사유)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한다.
 - 1.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공사가 기대한 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
 - 2. 무단지각, 조퇴, 외출 및 결근을 반복하는 경우

- 3. 형사상 범죄로 인하여 입건, 구속,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
- 4. 공사의 취업규칙 또는 기타 사규 및 방침을 위반한 경우
- 5. 입사시 학력, 경력 및 관련 정보를 속이거나 숨기고 입사한 경우
- 6. 공사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
- 7. 공사의 승인없이 타업무에 종사한 경우
- 8. 고의로 출근거부, 작업거부, 기타 작업진행의 방해를 하거나 다른 직원을 선 동하여 집단행동을 한 경우
- 9.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
- 10. 폭력 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타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
- 11. 공사의 물품을 허가없이 반출하거나 하려고 한 경우
- 12. 공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한 경우
- 13.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킨 자
- 14. 감독자로서 직무상 요구되는 정상적인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고발생의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
- 15. 혈연·지연·학연·성별·종교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 하여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우대하는 등 고용환경을 악화시킨 자
- 16. 금품비위, 성범죄, 채용비위 등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
- 17.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
- 18. 법령을 위반한 경우
- 19. 기타 위의 각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

제9조(징계의 종류 및 기준) 징계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- 1. 면직
- 가. 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,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자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세칙상 비밀을 누설한 자
- 나. 제8조 1호의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공사가 기대한 바에 미치지 못하는 자중 평가관련 규정에서 정한 종합평가결과가 2년 연속 C등급 이하인 자 또는 업무성과관리 프로그램 과정 중 3단계 부적격자
- 다. 횡령, 배임, 절도 및 금품수수등 범죄행위를 한 자

- 라. 고의 또는 중과실로 채용 비리 등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자
- 마.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자
- 바. 사고의 유형에 불구하고 동 사고로 사회에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자
- 사.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즉시 해고 또는 사전 예고 후 해고할 수 있다.

2. 정직

- 가. 면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있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자
- 나.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출근을 정지하고, 당해 기간을 결근으로 간주하여 무급으로 처리한다.

3. 감봉

- 가. 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과실로 공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및 과실로 보안세칙상 비밀을 누설한 자
- 나.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사안이 경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, 공사 의 손해를 전액 보전한 자
- 다. 별표 제2호에 의거 처리한다.

4. 견책

- 가. 감봉해당 행위를 한 자로서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자. 다만, 금융관련 범죄행위자는 제외한다.
- 나. 추종자는 원칙적으로 행위자에 준하여 문책한다.
- 다. 시말서를 받고 경고한다.

제10조(징계의 양정) ①징계양정시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사유를 감안하여 운용한다.

- 1.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소행, 근무성적, 공적, 개전의 정 및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
- 2. 징계대상자의 고의, 중과실, 경과실의 여부
- 3. 사고금의 크기, 손해의 변상여부
- 4. 사고발생후 사고수습, 손해경감을 위한 노력여부
- 5. 외적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여부
- 6.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의 경우 윤리·행동강령 [별표 3]
- 7. 성폭력, 성희롱, 성매매 등 성관련 위법행위자의 경우 별표 제3호
- 8. 음주운전관련 위법행위자의 경우 별표 제4호
- 9. 채용관련 비위행위자의 경우 별표 제5호
- 10. 공사 비밀의 누설 · 유출자의 경우 별표 제7호
- ②징계양정시 다음 기준에 따라 가중하여 운용할 수 있다.

- 1. 징계를 받은 후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종류별 승진·승급제한기간(이하 "징계기간" 이라 한다)내에 다시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를 다음 각목의 1과 같이 가중할 수 있다.
- 가. 정직조치를 받은 자가 징계기간 내에 다시 정직처분에 해당하는 위법·부당행 위를 한 경우에는 면직
- 나. 감봉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가 징계기간 내에 다시 감봉처분에 해당하는 위법·부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직
- 다. 견책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가 징계기간 내에 다시 견책처분에 해당하는 위법·부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봉
- 2. 둘 이상의 위법·부당행위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위법·부당 사항에 해당하는 제재보다 1단계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가. 가장 중한 제재가 정직 이상인 경우
- 나. 경합되는 위법·부당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는 경우
- 다. 경합되는 위법·부당행위가 실질적으로 1개의 위법·부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③ 징계양정시 다음 기준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하여 운용한다.
- 1.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과실행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- 2. 위법·부당행위를 사전에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- 3. 위법·부당행위를 당해 부서에서 발견하여 보고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- 4. 경미한 과실로 공사에 손해를 끼친 자가 손해액을 전액 변상한 때에는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- 제11조(징계양정의 감경기준) ①제10조에 의하여 징계를 양정함에 있어서 징계대 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(별표 제1호)에 따라 징계양정을 감경 할 수 있다. 다만, 동일한 공적에 의한 징계양정의 감경은 1회에 한한다.
 - 1. 상훈법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
 - 2.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표창을 받은 자
 - 3. 이 세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자(단, 징계사유 발생일 및 인사위원회 징계의 결일 기준 모두 부서장급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)
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양정을 감경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공적은 제외한다.

- 1. 제재대상 직원이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그 제재이전의 공적
- 2. 제재대상 직원이 공사 입사전에 받은 공적
-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각경할 수 없다.
- 1. 금융관련 범죄
- 2. 금품 및 향응 수수
- 3. 성폭력·성매매·성희롱
- 4. 음주운전
- 5. 채용비위
- 6. 공금횡령·유용
- 7. 고질적 비위 및 무소신, 무책임, 무사안일 등 부정적 근무행태에 기인한 행위
- 8.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
- ④인사위원회는 징계심의가 요구된 직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, 제3항의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제1호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.
- 제12조(징계의 효과) ①징계의 효과는 별표 제2호와 같다.
 - ②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.
 - 1. 정직 이상 3년
 - 2. 정직 미만 2년
- 제13조(징계절차) ①각 부서장은 제8조(징계사유)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소속직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사담당부서장 및 감사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②인사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의한 통지가 있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이 있는 것을 인지하였을 경우 자체조사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.
 - ③인사담당부서장은 사고내용이 업무와 관련되었을 경우 제2항에 정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감사실에 요청할 수 있다.
 - ④감사실장은 감사결과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직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 감사보고서를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

- 2. 징계사항 및 근거법규
- 3. 입증자료
- 4. 문답서
- 5. 징계양정 및 양정근거
- 제14조(소명기회의 부여) ①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 직원의 의사에 따라 징계혐의 사실에 관한 소명서를 제출케 하거나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두시켜 징계혐의사실 에 관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
 - ②장계대상 직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제15조(심문) ①인사위원회는 출석한 징계대상직원에 대하여 심문을 행하고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증언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 - ②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경우 인사위원회는 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증언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 - ③제13조 제1항의 경우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사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제15조의2(재심) ①사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결권자가 행한 상벌내용이 부당하거나 공평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②징계처분 또는 변상판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유 및 입증자료를 첨부, 인사담당부서장을 경유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 - 1. 그릇된 증거문서나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근거로 심의 결정한 경우
 - 2. 심의결정에 명백히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
 - 3. 관계규정의 적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③ 재심에 의한 징계처분 변경의 효력은 원징계 처분일에 소급한다.
 - ④청구에 의하여 재심한 사항에 대하여 또다시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.
- 제16조(형사사건과의 관계등) ①징계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처분을 보류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②징계대상자에 대하여 감사 또는 감독기관에서 조사중이거나 또는 검찰, 경찰
 -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때에는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 세칙에 의한 징계절차를 진행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.

- ③제2항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인사담당부서소속 대기를 명할 수 있다.
- **제17조(손해배상과의 관계)** 이 세칙에 의한 징계처분은 손해배상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다.
- 제18조(징계사유의 시효) ①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(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, 공금의 횡령·유용, 채용비위의 경우에는 5년)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.
 - ②제16조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계시효는 감독기관의 조사나 검찰·경찰,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.
 - ③인사위원회 등의 구성, 징계의결 등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.
- 제19조(승진소요기간 및 연봉조정 적용기간 계산의 특례) 별표 제2호에 규정된 승진 및 연봉조정 제한기간은 인사세칙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년수 계산시 근속기간 및 보수규정에 의한 연봉조정 적용기간 계산시 근무기간에서 각각 이를 공제한다.
- 제20조(징계의 중복) 징계효과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새로운 징계의 징계효과 발생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
 - 1. 면직의 경우 : 즉시 효과발생
 - 2. 정직의 경우
 - 가. 정직기간 : 즉시 효과발생. 다만, 정직기간 진행중인 경우에는 정직기간 종 료일로부터 효과발생
 - 나. 신분상 조치 및 급여상 제재 : 진행중인 징계효과와 병합
 - 3. 감봉, 견책의 경우 : 징계효과 병합
- 제21조(퇴직직원 위법·부당행위의 기록 및 유지) ①퇴직한 직원의 위법·부당사실 등을 외부 기관으로부터 통보받거나 퇴직한 직원의 징계대상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, 인사위원회가 결의하는 경우 퇴직 직원의

인사기록서류에 위법 · 부당사실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.

②인사위원회가 징계대상 행위를 심의할 때에는 퇴직 직원에게 3일전까지 통보하여 퇴직 직원이 징계대상 행위에 관한 소명서를 제출하거나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징계대상 행위에 관하여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22조(징계기록의 말소) ①제9조에 의한 징계 처분기록의 말소제한기한은 별표 제6호를 따른다.

②사장은 감봉 또는 견책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른 징계처분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.

1. 감봉 : 3년

2. 견책 : 2년

③징계기록이 말소된 후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
제23조(주의촉구대상 및 기록말소) ① 직원의 행위가 징계대상에 해당하나 행위의 성격, 비위의 정도 및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의촉구를 명령할 수 있다.

- 1. 징계심의결과 징계결정을 하기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
- 2. 감사 및 준법감시인이 주의촉구를 요구한 경우
- 3. 지시·명령을 위반하거나 근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
- 4. 책임자로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
- ② 주의촉구 조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주의촉구 기록을 말소한다.

제24조(주의촉구의 효력) 최근 1년간 3회의 주의촉구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(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시행일 전일 현재 내부 품의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(1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8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3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5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4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5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6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6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7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7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8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8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9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0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1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별표 제6호의 징계 말소제한기간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징계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12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3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4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5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(별표 제1호) 징계양정 감경기준

징계양정기준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	표창자에 대한 감	경된 징계양정
면 직	정	직
정 직	감	봉
감 봉	견	책
견 책	주 의	촉 구

(별표 제2호) 정계의 효과

구 분	면직	정 직	감 봉	견 책
신분상 조 치	파면	정직기간+18월간 승진, 연봉조정 불허	감봉기간+12월간 승진, 연봉조정 불허	6월간 승진, 연봉조정 불허
급여상 조 치	-	1. 월정급여: 부지급 2. 업적급 정직기간 해당금액 부지급	1회에 한하여 평균임금 1일분의 50% 감액 지급	-

- ※ 정직 및 감봉은 1월내지 6월을 기준으로 함
- ※ 금품 및 향응 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, 성폭력, 성희롱 및 성매매, 채용비위,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6개월을 가산한 다

(별표 제3호) 성관련 위법행위자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

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	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바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,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	비위의 정도가 약하고, 경과실인 경우
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성폭력범죄(업무 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)	면직	면직	면직	정직
나. 가목 외의 성폭력범죄	면직	면직	정직	감봉-견책
다.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	면직	면직	정직	감봉-견책
라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	면직	면직·정직	정직·감봉	감봉-견책

(별표 제4호) 음주운전 관련 위법행위자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

음주운전 유형			처리기준	
혈중알코올농도가 0.08퍼센트 미만인 경우			정직・감봉	
최초 음주운전을	혈중알코올농도가 0.08퍼센트	정직		
금무군선물 한 경우	혈중알코올농도가 0.2퍼센트	이상인 경우	면직ㆍ정직	
	음주측정 불응의 경우			
2회 이상 음주	운전을 한 경우		면직	
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			정직	
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			면직	
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음 주 운 전 으 로			면직ㆍ정직	
임적·물적 피해가	사망사고의 경우		면직	
	사고 후 「도로교통법」	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	면직ㆍ정직	
일으킨 경우	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	면직	
운전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이	[단어귀소 시판을 받는 경구		면직	
응주요전을 한 경우	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		면직ㆍ정직	

- 1. "음주운전"이란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.
- 2. "음주측정 불응"이란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.
- 3. "운전업무 관련 직원"이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직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. 다만,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.
- 4.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 시행일인 2011년 12월 1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부터 산정한다.

(별표 제5호) 채용 관련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

□ 채 용

구 분 비위유형	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		관련자가 채용된 경우	
응시·자격 요건 미확인 ¹⁾	경과실	고의・중과실	면직ㆍ정직	
6시·시작 교신 리락인*	주의촉구	감봉・견책	27 87	
	경과실			
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	주의촉구	면식 정식 감봉,	면직ㆍ정직	
		견책		
채용공고 후 응시·자격 요건 임의변경절차 마이행변경	감봉·견책		면직ㆍ정직	
	저희 미즈스	주요절차 ³⁾		
채용절차²) 미준수	절차 미준수	미준수	면직ㆍ정직	
	감봉・견책	면직ㆍ정직		

구 분 비위유형	경과실	고의·중과실
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	감봉・견책	면직ㆍ정직

^{*} 징계시효(5년)내 3회 이상 채용비위를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분할 수 있음(예 : 견책→감봉)

□ 일반직원 및 특정직원 전환

구 분 비위유형	경과실	고의・중과실
최초 채용 및 전환 모두 부정채 용 ⁴⁾	면직ㆍ정직	
(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)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 는 부정채용	감봉·견책	면직ㆍ정직
전환 기준절차 미준수,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	감봉・견책	면직ㆍ정직
전환평가 과정5)의 부적정	감봉·견책	면직ㆍ정직

¹⁾ 응시·자격요건 미확인 : 학위·자격증·경력·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

^{**}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

²⁾ 관계 법령, 상위 지침, 내규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

³⁾ 채용공고, 서류·면접 전형위원 구성, 위원의 제척·회피 규정의 준수,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

⁴⁾ 재직자/친인척(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) 특혜, 부정청탁,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경우

⁵⁾ 전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가, 성과평가 등의 부적정 포함

(별표 제6호) **징계 말소제한 기간**

처 분	정 직	감 봉	견 책
말소제한기간	7년	5년	3년

(별표 제7호) 공사 비밀의 누설·유출자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

	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실하고 생각된	
공사 비밀의 누설 • 유출	면직	면직	정직	감봉·견책